

대법원

2012. 4. 26. 월본영수  
2012. . . 판결송달 인

제 3 부

판 결

사건 2012다15435 신분보장받을 권리확인 청구의 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입그루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3 다세대주택 에이동 103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케이티 노동조합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자 위원장 김구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탑(담당변호사 박정익, 조영선, 이승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재나49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4. 26.

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11월 26일  


대법관

신영철

신영철  


주심 대법관

민일영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박보영  


# 정본입니다.

2012. 4. 27.

대법원

법원사무관 손영기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